

이 자료는 2012년 6월 28일(목) 16: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 고 자 료

2012. 6. 2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1

글로벌 위기,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상시점검체계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2
2.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거시경제금융회의로 전환 3
3. 커버드본드 법제화 추진 4
4. 재정지출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5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현황과 정비계획 7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9

2

재정투자, 증액(4조원)과 집행률 제고(4.5조원)로 보강하겠습니다.

7. '12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 주요 내용 13
8. 공공기관 투자 확대 15
9. 민간투자 집행규모 확대 16
10. 민간건설사 선투자 활성화 17

3

민간투자,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1. 설비투자펀드 조성 19
12.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20
13. 건설사 P-CBO 발행 21
14. 부실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취소 허용 22
15. 부동산 사업 평가체계 도입 추진 23

16. 알뜰주유소 현황과 확산을 위한 보완방안	25
17.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	26
18. 농축수산물 관측대상 확대방안	27
19. 계약재배물량 확대	28
20. 배추, 고추 등에 대한 국산비축 현황과 확대방안	29
21.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30
22.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	31

23. 군 특성화고 제도	33
24. 군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기술병 편입시 우대방안	34
25. 전역 전 취업지원 강화 방안	35
26. 해외건설 실무학기제	36
27. 융자상환조정형 청년창업자금	37
28. 공공기관 채용규모와 확대 계획	38
29. 공공기관 고졸채용 가이드라인	39
30. 실업급여 연령제한 완화	40
31. 시니어 비즈 플라자	41
32. 전직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42
33. 군입대 고졸자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43

6

가계부담,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 34.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 허용 45
- 35.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46
- 36.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47
- 37. 청년·대학생 고금리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48
- 38. 청년·대학생 긴급 생활자금 대출 49
- 39.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지원 확대 50
- 40.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취득세 감면 51
- 41. 임대차 중도해지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52
- 42. 월세지급액 등 소득공제 확대 53
- 43.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지원 54

7

미래준비, 서비스산업·녹색성장 등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4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와 실효성 제고방안 56
- 45. 배출권거래제 개요와 시행령 제정 방향 57
- 46.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현황 59
- 47.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 60
- 48. 주택연금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61

8

기타 참고자료

<경제활력 제고>

- 49. 전력수요 분산(산업계 휴가분산·조업조정) 63
- 50. 제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화 도모방안 64

5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보의 보증연계투자	65
5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과 개편방안	66
53.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 현황과 운영방향	67
54.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안	68
55. 클라우드 펀딩 도입 계획과 효과	69
56. 간편판정 FTA PASS 개발과 보급 확대방안	70
57. 국가 R&D 사업의 성실실패 제도	71
58. 직장보육의무 미이행기업의 명단 공표	72
59.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용자 제도개선	73
60. 폐기물거래소 구축·운영	74

<서민생활 안정>

61.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활성화 방안	78
62. 착한가격 업소 지정 현황	79
63.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맞춤형 기능 활성화 방안	80
64. 택시총량제 증차분의 일정비율을 경형택시로 전환	81
6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82
66.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요와 개선방향	83
67.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방안	85
68. 임금삭감 고용유지 기업 과세특례	86
69.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규제 정상화	87
70.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88
71.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89
72. 12년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방안	90
7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개편방안	91
74.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현황과 확대방안	93
75.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재해예방투자 추진	94

**1. 글로벌 위기,
체계적 · 구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상시점검체계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① 추진배경 · 필요성

- 위기상황의 상시화 ·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동향 파악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
 - 특히, 대내외 중대 이벤트 발생시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외화 자금시장 경색, 외환시장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불안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
- 대내외 주요 이벤트 전후의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대응책을 신속히 시행하여 시장 불안을 방지

② 주요내용

- 국내외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자금유출입 상황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 ① 자금시장점검회의(기존 차관주재)를 장관주재로 격상하여 개최함으로써 위기 예방에 집중
- ② 국금센터·KIC·IB 등 활용 가능한 정보 자원을 총동원하여 외국인 투자자 동향 파악, 외화차입 여건 등을 점검
- ③ IMF와 연락체계 구축, 각국 주요 거점 대사관을 통한 현지 당국의 정책 대응 모니터링 등을 실시

2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거시경제금융회의로 전환

① 추진배경 · 필요성

- 그간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거시정책 · 금융 담당 기관들은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거시건전성을 수시로 점검

중요 사안 발생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하면서 관련 상황에 대한 기관간 인식을 공유

- 그러나, 위기 상시 ·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관계기관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점검 체계는 부재

② 정기적 거시건전성 점검 체계 마련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급)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개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점검

- * (현행) 대내외 긴급상황 발생시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수행
(개선) 정기적인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보장

현행 체계와 개편후 체계 비교

	현행	개편
회의명칭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주기	수시 개최	정기 개최
회의기능	대내외 긴급상황 발생시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수행	이에 더하여 정기적인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보장
참여기관	기재부 차관·의장,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 필요시 관련기관 참여	좌동

③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1] 커버드본드 개요

- 발행회사의 특정 기초자산 풀(pool)에 대하여 배타적인 우선권이 부여(ring fenced)된 채권을 의미

담보자산은 법적으로 발행회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지만, 회계적으로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내에 잔존

투자자는 ① 발행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청구권 ② 발행자 도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의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유

2] 추진배경 · 필요성

- 커버드본드는 다른 유동화 증권에 비해 발행자(은행), 투자자 등에 유리하고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발행자) 저금리로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조달이 가능

-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투자자) 채권시장에 안전자산이 공급되어 보험·연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내 장기채 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

-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할 필요

※ 구조화 커버드본드 모범규준('11.6월)을 제정하였으나, 구조화 비용과 이중상환 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

3] 향후 계획

-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 '12.6월
- 법률안 초안 마련: '12.7월
- 입법예고: '12.8~9월
- 국회제출: '12.11월

4

재정지출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1 개요

- 의무·재량지출 구분·관리를 통한 선진국형 지출관리방식 도입

2 추진배경·필요성

- 국가재정법(10.5 개정)은 의무지출을 정의하고 '12년 중기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0.5월 개정)

1의2.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1의3.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7조)에 따라 교부세 등 법정지출과 국채 등에 대한 이자지출로 분류

* 법정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강제되어 있고 지출규모도 법령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정부재량이 제한적임

- 재량지출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말함

3 향후 계획

- 각 부처에서 예산안 요구시(6월 20일까지) 모든 재정사업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제출

- 의무·재량지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10.2일)

* (예시) 의무지출은 PAYGO원칙 적용,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총량 또는 분야별 지출증가율 한도설정(ceiling) 등 검토

- ① (의무지출) 법정지출(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국채·차입금 등)
- ① (법률상 지출의무 판단기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여지가 없는 지출
- 의무지출 여부는 개별 사업의 근거법률에서 해당지출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로 판단
 - 다만, 국가사무의 자치단체 위임사무 등 타 법률에서 해당 지출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의무지출로 판단 가능
 -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의무지출로 분류
 -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공포된 조약 및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지니는 규범에 의한 지출은 의무지출로 분류
- ② (법령상 지출규모 결정 판단기준) 지출규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재량이 제한적인 지출
- 법령은 법률 및 하위규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을 포함
 - 해당 지출의 성격상 법령에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원,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두는 경우도 포함
 - 국제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지출규모가 회의결과서, 선언문, 협약(MOU) 등에서 나타나면 의무지출로 판단
- ② (재량지출)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현황과 정비계획

①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근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 근거법령별 감면규모(조원, '10) : (지특법) 12.0 (조례) 1.5 (조특법) 1.3

-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국세 감면보다 빠르게 증가

	국세		지방세	
	'00	'10	'00	'10
감면규모(조원)	13.3	30.0	2.3	11.8
감면율(%)	12.5	11.1	10.2	23.2

-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② 향후 계획

- (기본방향)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 감면연장, 신설 허용

* '10년 23.2%에서 '15년까지 국세수준('10년 기준 11.1%)으로 개선

** 감면요청에 대해 수시 건별 심사하지 않고 매년 감면수요를 파악해서 6월 중 일괄 심사하되 사전에 정한 감면허용 채원규모내에서 감면 수용

- (감면축소) 금년은 '12년 일몰예정 감면액 2.89조원의 30~50%를 정비할 계획

* '12년 감면통합심사위원회 개최(1차 6월·중, 2차 6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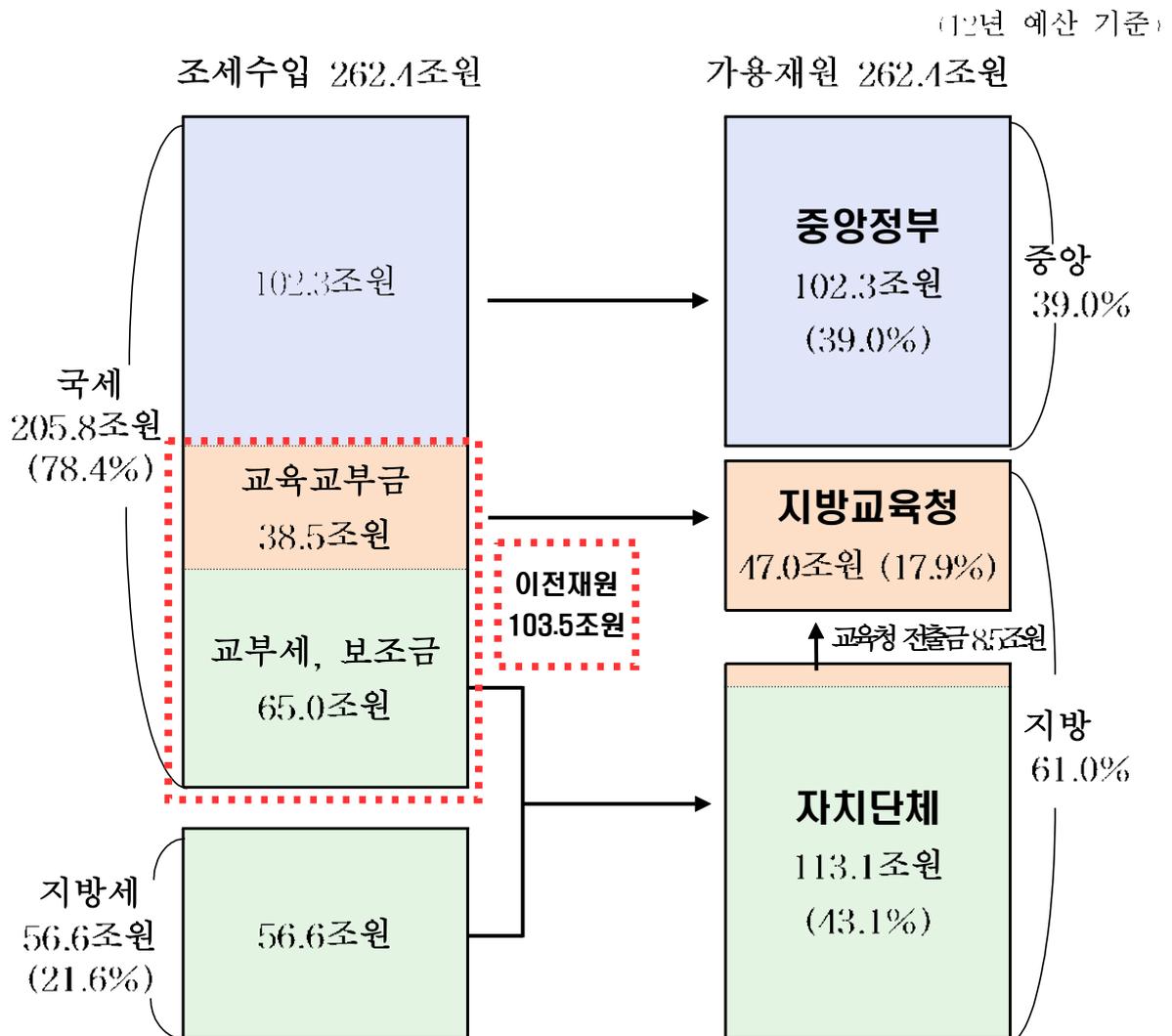
별첨

지방재정 현황

□ 중앙 지방의 조세수입 총량('12년 예산기준)은 262.4조원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 수준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103.5조원 이전(교부금·보조금)

⇒ 최종 지출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용재원 비중은 4:6수준으로 역전



1 추진 배경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
 - * 이사회와 사외이사 비율, 상근임원 겸직제한 범위, 임직원 제재시 임원 자격제한 범위, 임원결격 사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과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과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시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 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2 주요 내용

- 은행, 금투,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에 적용
-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임원자격 제한, 임직원 겸직제도 등을 개선
-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제도와 위험 관리·보상체계 개선

3 추진 계획

- '12.6월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① (적용범위) 은행, 금투,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

-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일부규정 적용 면제
-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임직원 제재 등 일부규정만 적용

② 이사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

- 이사회 3인 이상 구성,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 주요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 명시
- 업무집행책임자* 임면시 이사회 의결
 -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책임 등을 부과

③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제한,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 확대(2년→3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2인 이상→3인 이상)와 사외이사 비중(1/2이상→과반수) 확대, 사추위 위원의 자기투표 금지
-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 강화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 요건 준용
-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 도입, 사추위에서 감사위원 추천
 - * 이사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안건(3% 의결권 제한)과 나머지 이사 선임 안건(의결권 제한 없음)을 분리하여 처리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지원 의무(지원부서 설치, 자료·정보 제공, 전문가 조력 등) 부과, 감사활동 보고서의 주기적 금융위 제출 의무화

⑤ 임원자격 제한 제도와 임직원 겸직제도 개선

-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제재받은 임직원에 대한 선임 제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업권간 자격제한 수준을 통일
 - * 현재는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 규정
- 상근 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종사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직원·비상임이사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등

⑥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공시 의무화

- * CEO를 포함한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

⑦ 내부통제 제도 개선: 준법감시인 지위 향상 및 자격요건 정비

-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기(2년) 보장,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 보수와 평가기준을 경영성과와 별도로 운영
-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격을 제한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시에는 즉시 자격을 상실
 - * 주의, 주의적 경고, 견책 등 경미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자격 가능

⑧ 위험관리·보상체계 개선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관리 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어 위험관리 강화
 - *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 보수위원회* 설치 및 보상원칙 근거(성과보상 이연지급) 마련, 임직원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공시**
 - *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내 위원회
 - ** 보수위원회의 구성·권한·책임 및 보수총액 등

**2. 재정투자,
증액(4조원)과 집행률 제고(4.5조원)로
보강하겠습니다.**

1] 개요

-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는 총 2.3조원 수준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나, 기금별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음

2] 세부 내용

-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역점
 - (서민생활 안정)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지원을 확대하고, 농작물 비축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도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보험을 확대하고, 창업, 기술개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를 증액
 - (관광산업 지원 등 기타)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자지원 확대 및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시설비 조기 지원

3] 향후 계획

-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20%, 금융성기금 30%)내 변경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

*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별첨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사업 개요

주요 기금명	주요 사업명	사업개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12,300억원)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 확대
임금채권 보장기금	체당금 지급 (120억원)	○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 지급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비축지원 (622억원)	○ 저장성있는 농산물 비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농식품 운영활성화 (200억원)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융자 90%)
	산지유통 활성화 (200억원)	○ 노지채소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지원(융자 80%)
	소비자유통활성화 (150억원)	○ 농산물 거래활성화 위해 도매시장, 사이버 거래소 원물확보자금 지원(융자 80%)
축산발전기금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 (200억원)	○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생산농가에 생산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기업지원자금 (1,600억원)	○ 창업활성화 및 유망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대위변제 (65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확대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200억원)	○ 유동화회사 보증규모 확대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 대위변제 (150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확대
	보증연계투자 (100억원)	○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연계 지원
무역보험기금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185억원)	○ 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등 리스크 완화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325억원)	○ 관광숙박시설 건설 융자 지원금액 확대
국민체육 진흥기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300억원)	○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시설비 지원

① 개요

- 당초 '13년 집행예정이던 혁신도시 투자물량 조기화
- 에너지와 SOC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투자 추진

② 세부 확대방안

① 내년도 혁신도시 사업 물량 일부를 금년 하반기에 조기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LH공사에서 6,500억원 수준 추가 투자

* '13년 집행예정이던 조정·도시시설물 공사비(5,200억원), 한국관광공사 등 청사건설(974억원), 공동주택 건설(335억원) 등 조기 투자

② 발전소 건설, 발전시설 보강 등 에너지 분야 2,700억원 수준 투자 확대

③ 댐건설, 철도차량 개량 등 SOC 분야 2천억원 수준 투자 확대

⇒ 상기 투자규모를 모두 합하면 1.1조원 수준

9

민간투자 집행규모 확대

1 개요

- '12년 민간투자 집행계획은 기 공사중 사업 5.1조원, 신규착공 사업 1.2조원 등 총 6.3조원 규모(183개 사업)

< 민간투자 현황 >

(개수, 조원)

구분	합계	추진방식별		추진단계별		분야별			
		BTO	BTL	기공사중	신규착공	도로	철도	국방	기타
사업수	183	50	133	128	55	21	6	48	108
민간투자 집행금액	6.3	2.6	3.7	5.1	1.2	1.8	0.6	1.2	2.7

2 확대방안

- 착공 전후 사업별로 집행규모 확대 추진(6.3조원 → 6.9조원, '12년 계획 대비 0.6조원 증가)

(기 공사중 사업)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민간투자비 집행금액을 실시협약상 연도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최대한 확대

* 41개 사업(BTO 10, BTL 29), 총 0.5조원 확대(BTO 0.25, BTL 0.25)

(착공 전 사업) 금융약정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 대폭 단축 등을 통해 조기착공 유도

* 서울 제물포 터널 등 BTO 7개 사업, 총 0.1조원 확대

* (방식별) BTO 0.35조원, BTL 0.25조원 확대

(분야별) 도로(0.3조원)와 철도 등 기타(0.3조원)에서 확대

< 집행규모 확대 >

(개수, 조원)

구분	합계	단계별		방식별		분야별			
		기공사중	신규착공	BTO	BTL	도로	철도	국방	기타
사업수	190(7)	128	62(17)	57(17)	133	24(13)	7(1)	48	111(13)
민간투자 집행금액	6.9(0.6)	5.6(10.5)	1.3(10.1)	2.95(10.35)	3.95(10.25)	2.1(10.3)	0.7(10.1)	1.3(10.1)	2.8(10.1)

① (추진배경) 내수경기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그간 부진했던 민간선투자 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민간선투자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사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시공한 부분의 기성검사가 완료될 경우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주무 관청이 해당연도 연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 예산집행지침)

② (추진현황 및 문제점) '08년 내수 확충과 SOC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금융비용 과다,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건설업체의 참여 미흡

	‘08년 시범	‘09년	‘10년	‘11년	합계
▪ 계획		2조원	1,020억원		
▪ 실적	2,200억원	616억원	61억원	317억원	3,227억원

③ (민간선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추진

- 인센티브 인상: 현행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평균값과 5% 중 큰값 →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되, 최대 6%까지 지원 (총사업비지침 개정, 6월말)

* 금융비용 : 은행 대출이자, 보증 수수료 등 수준 ('12.4월 5.4%)

- 대출금리 인하: 현재 산업은행만 취급하고 있는 선투자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금리인하 경쟁 유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간 보증협약 체결 추진(~9월말)

**3. 민간투자,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추진배경 · 필요성

- '12년중 불확실성, 수요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도 우려
 - ※ 설비투자 축소 요인(%): '12 설비투자계획조사, 정책금융공사)
 - (경기불확실)35.3 (국내수요부진)23.5 (자금부족)18.3
 - '자금부족' 응답비중(%): (대기업)7.3 (중견기업)21.3 (중소기업)19.8
 - '12년중 대기업 설비투자는 전년비 6.8% 증가하겠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6%, △11.5% 감소할 것으로 조사(정금공)
-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 ※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9%, 고용의 87.7%를 차지

② 운영계획

- (조성규모) 산은·기은 등이 3조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존의 설비자금 공급계획과 별도로 관리
- (자금공급)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14년까지 자금지원을 완료
 - 올해 하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
- (지원방식)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추어 지원
 - 직접투자의 경우 수요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 (정부 출자) 설비투자펀드 조성 기관에 대해 펀드 운용에 따른 예상손실률을 감안하여 정부출자 추진

12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1] 개요

- 현재 대형업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지원 중

대형사가 주거래은행에 약정액을 무이자로 예치하는 대신, 협력사의 대출금리를 1~2% 인하하는 방식

-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11년 992억원 → '12년 1,912억원)

‘12년 상생협력펀드조성 및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현대 건설	삼성 물산	GS 건설	포스코	대익 산업	대우 건설	롯데 건설	현대 산업	SK 건설	한화 건설
출연금액	1,833	400	270	300	260	150	100	200	20	33	100
조성금액 (1.5배)	2,855	400 (1배)	540 (2배)	300 (1배)	520 (2배)	150 (1배)	200 (2배)	400 (2배)	60 (3배)	135 (4배)	150 (1.5배)
지원금액	1,942	300	100	300	260	120	200	400	50	62	150

※ 협력사의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 지원 필요 금액

2] 기대효과

- 건설업계의 자체 노력을 통해 중소 협력사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13

건설사 P-CBO 발행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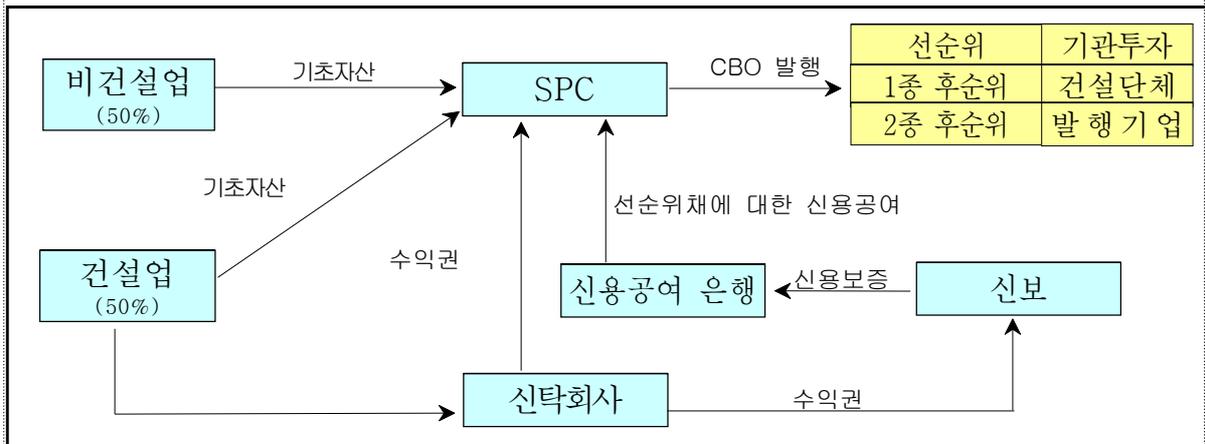
- 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P-CBO 발행

2 기대효과

-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지원

< 건설사 P CBO 개요 >

- ◇ (기본 구조) 건설업(편입비중 50%) 및 기타 업종(편입비중 50%)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
 - 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시장에 매각
 -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순차적으로 부담



◇ 지원 규모

- '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여 '12.6월말까지 총 1.3조원 발행

(단위 : 억원)

구분	1차 (10.12.15)	2차 (11.3.30)	3차 (11.6.29)	4차 (11.9.29)	5차 (12.3.29)	6차 (12.6.13)	합계
업체수	75	95	65	90	60	40	425
발행금액	4,020	3,500	1,840	2,000	1,350	530	13,240

① 추진배경

-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권을 유지하여 사업정상화에 걸림돌
 - 자본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행사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경우 원만하게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
 - * 현재는 시행권 등 권리관계로 인해 시행사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부실의 피해가 보증채무자인 시공사와 차주인 금융회사에만 귀착
- 시행사가 사업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 부실 시행사의 시행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② 개선 방안

-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가능 사유를 확대
 - (현행) 사업계획 승인 후 2년간 공사 미착수 ⇒
(개선) 경·공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부도, 착공 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을 추가(대한주택보증 등의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
 - * 부도, 2년 이상 공사 중단시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사업장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여부 결정

③ 향후 계획

- '12년 하반기 중 주택법 개정 추진

1 개요

-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하여 부동산개발의 건전성 제고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

2 기대효과

- 현재 시행사는 사업자금 대부분을 시공사 보증에 의한 대출로 조달
 -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익의 대부분을 시행사가 차지하여, 성공 가능성이 적은 개발사업들 조차 무리하게 시작
 시공사는 보증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사업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의존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황
- 시행사의 전문성,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1F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역량이 부족한 시행사의 난립을 억제하고 부실 1F에 따른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경영악화를 방지

3 향후 계획

- 국토부를 중심으로 평가주체, 평가방법,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마련

**4. 2%대 물가,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으로
달성하겠습니다.**

1 현 황

- '11.12월 출범하여 6.25일 현재 565개 운영중이며, '12년말까지 1천개 설립할 계획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6개소의 알뜰주유소가 운영중이며, '12년말까지 25개로 확대할 계획(□□마다 1개소 목표)

2 확산 방안

- (전환 인센티브 확대) 한시적 세제·금융·재정 지원 확대
 - (세제) 소득·법인·재산세 일시 감면[※]을 위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세법 개정안 상정하고, '12년도분 전체에 적용 예정
 - *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확대(10%→20%), 재산세 2년간 50% 감면
 - (금융·재정) 신용보증 확대[※], 풀 전환 공사비용 지원 확대, 외상거래 실시^{***} 등은 4월말부터 旣 시행중
 - * 매입시 시설자금(최대 100억원) 지원, 임차시 운전자금 보증(연 매출액의 1/6~1/4 → 1/4~1/3)
 - ** 시설개선자금(최대 2.3천만원/70~90% → 최대 3천만원/90%), 외상거래자금(미실시 → 최대 5억원)
- (서울지역 확산) 주유소 협회중심 전환 희망 주유소 발굴,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매입, 공영주차장 주유소 설치 등 병행 추진
- (삼성토탈의 알뜰주유소 공급) 제5공급사로서 삼성토탈이 7월중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 예정
 - * 물량: 1차분 3.5만배럴(고속도로·자영 알뜰 주유소 6월 물량의 약 20%), 이후 추가 확대

① (추진배경) 공급자 위주인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나,

○ 정유사 참여가 저조하여 아직까지 전자상거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유사는 매도 호가공개로 인한 기존 소속 주유소의 반발·이탈 우려 등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에 미온적

② (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용 수입 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휘발유·경유 수입물량에 대해 현 기본관세 3%→할당관세 0% 적용

** 리터당 16원 → 전액환급

○ (기대 효과) 수입 휘발유·경유의 가격은 리터당 약 40~50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

- 수입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가격이 리터당 약 25~33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 수입부과금(16원/l) 환급으로 리터당 16원이 인하 가능

○ (시행 시기) 6월중 관세법 시행령과 석대법 시행령 개정하여 7.1일부터 적용

전자상거래 TF를 운영하여 상기 수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거래가 실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

* 지경부, 석유공사, KRX, 수입사 등 참여

1 농축수산물 관측 현황

- (농축산물)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31개 품목(곡물2, 과일6, 과채6, 축산6)에 대해 관측 실시
 - 매월 관측품목별로 월 1회 관측, 속보 등 발표(농업관측센터장외 35명, '12년 예산 : 61억원)
- (수산물) 주요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한국수산개발원(KMI) 관측센터에서 7개 품목(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미역, 송어)에 대해 관측 실시
 - 매월 관측품목별로 월 1회 관측 등 발표(관측센터장외 12명, '12년 예산 : 20억원)

2 추진배경 · 필요성

- (농축산물) 한·미 FTA, 한·EU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국제시장의 국내영향 심화 등
- (수산물) 대중어종의 생산 및 유통정보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고 종합적인 수집, 분석기능 미흡
 - * 현재 농식품부(정책·제도), 수산과학원(어황전망), 수협 및 원양협회(생산 및 산지가격), aT(도소매가격), 검역검사본부(재고량)에 정보 산재

3 향후 계획

- (농축산물) 국제곡물 옥수수, 대두, 밀 3품목에 대하여 관측 사업 실시('12.7월)
 - * '13년도 국제쌀 품목 확대 계획
- (수산물) 대중어종인 4개 품목(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관측 확대('12.6월)
 - * '13년 이후 본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품목 확대 추진

19

계약재배물량 확대

1] 개요

○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전체생산량의 50%수준**으로 확대

* 대상품목(8개)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 사업목표 : ('12년) 1,236천톤(생산량 30%) → ('13) 1,800(30%) → ('15) 3,000(50%)

○ 가격 변동성이 높은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물량 우선 확대

연도별 계약재배 확대 계획 (단위: 천톤, %)

	'11년	점유비	'12년	점유비	'13년	점유비	'15년	점유비
전품목	692	11.7	1,236	20	1,800	30	3,000	50
배추	207	8.6	721	30	812	35	1,320	55
양파	297	21.6	362	30	422	35	660	55
고추	7	5.8	17	15	21	20	35	30
마늘	46	13.1	52	15	70	20	85	25

* 자료: 농협중앙회

2] 향후 계획

○ 계약재배물량의 차질없는 확대를 위해 사업방식 개선

다년계약제를 배추에 우선 도입하여 시장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배면적 확보

* 재배농가와 3~5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

- 산지작업반(포전관리, 출하작업)을 운영하여 계약물량을 재배 단계에서부터 산지유통인 수준으로 관리

영농지도·자문, 지역별 생산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가와 농협간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참여 확대 유도

1] 개요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배추 등의 파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3~4월(봄배추), 8월(고랭지 배추) 등 작황 교체기에 비축 확대

〈비축규모 : 2만톤 이내〉

	합 계	고랭지배추 출하전기(6월)	고랭지배추 출하후기(8월)	겨울배추 출하전기(12월)	겨울배추 출하후기(3월)
수매작형		봄(노지)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비축물량	21,470	6,480톤	4,750	5,170	5,07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방안 연구(2011)」 결과 적용

** 연간 재정소요 : 연간 117억원 추정(농안기금 5,350억원 활용)

2] 추진배경 · 필요성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저장성이 있는 품목을
사전에 수매한 후 가격 상승시 방출
 -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농산물)과 수협(수산물)에서 비축하고
있으나, 물량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 제한적
 - * (농산물)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참깨 / (수산물) 명태, 고등어, 오징어

3] 향후 계획

- (양념류) 고추 : '11년 0%(0톤) → '12년 2%(4천톤)
마늘 : '11년 1%(3.4천톤) → '12년 2%(6천톤)
- (수산물) 비축율을 1% 수준으로 확대
 - * 수산물 비축율 : 11년 0.8%(6.7천톤) → 12년 1%(8.1천톤) → 15년 5%(40.1천톤)
 - ** 비축계획 : 명태 2.5천톤, 고등어 2, 오징어 등 3.6

① 상반기 실적

- 한미 FTA 발효(12.3.15)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FTA 체감효과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 물가장관회의 상정내역 ▶

- (4.27) 한미, 한EU FTA 관련 주요 품목 가격동향 및 대책
- (5.18) 유모차·소형가전 가격동향 및 대책
- (6.15) 화장품 가격동향과 대책

② 하반기 계획

-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FTA 관세인하효과 외에 가격추세, 국내외 가격차이 등을 추가분석하여 필요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① 일정기간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

- (가격조사, 7월)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주요 품목들의 가격추세 분석
- (품목선정, 7월)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품목 선정
- (방안마련, 8~12월) 품목별 유통현황을 분석하여 독과점적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②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품목

- (가격조사, 6~7월) 소비자단체를 통해 주요 품목들의 국제물가 조사
- (품목선정, 7월) 외국에 비해 국내가격수준이 현저히 높은 품목 선정
- (방안마련, 8~12월) 품목별 원가요인·단계별 유통마진 등을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③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 (가격조사, 매주) 소비자원에서 FTA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을 주간단위로 점검
- (방안마련, 8~12월)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

- ① (개요)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
-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년도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10,000이상인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간 가중치를 확정하여 5년간 매월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소비구조가 변화되어 지수 대표성이 약화되고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5년마다 기준년도를 바꾸는 지수개편을 하고 있음
- ② (필요성) 현행 물가지수는 5년마다 개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반영도가 낮음
- 따라서, 경제·사회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품목, 가중치 등 물가통계의 편제를 전면 재조정하고,
 - 선진통계 기법의 도입,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의 작성·공표 필요
- ③ 향후 계획
- 물가통계지수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지수개편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개편작업기간도 최소화 (예시 : 0, 5자년 → 0, 3, 5, 8자년)

**5. 일자리,
40만개까지 늘리고
고용유인형 세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 개요

-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군에서 요구되는 기술분야를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으로 입대
 - * 재학중 기술훈련·장학금(150~200만원) 지원후 유급지원병(2년 병사 11년 부사관) 복무

2] 추진배경·필요성

- (추진 배경) 국방개혁 2020 추진으로 유급지원병 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
 - *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MOU 체결(국방부, 고용부, 교과부, 중기청)
- (필요성)
 - (입대 전)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
 - (복무 중) 전문분야에 보직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
 - (전역 후) 관련분야에 산업전사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
- (추진 현황) 군 특성화고 10개소를 지정하여 '08~'11년간 2,603명 양성

3] 향후 계획

- '08~'12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 기술 습득(특성화고) - 전문분야 복무·진학(유급 지원병) - 관련 분야 취업(전역 후)'으로 기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①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대

- (개요) 입영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 '12년 배정규모: 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
- (병역지정업체 선정)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나머지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협약업체,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 ('11년 기준 약 2,000여개)
- (병역이행자 편입 우대) 지정업체에 종사중인 사람으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우선 편입

② 기술병 편입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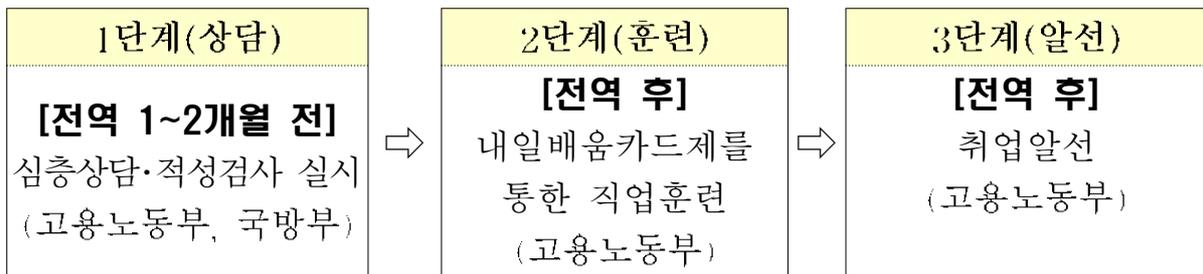
- (개요) 18세 이상 28세 이하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현역입영 대상자 중 기술분야 편입 희망자를 기술병으로 편입
 - * '12년 기술행정병 모집예정 인원 : 약 70,000명 내외
- (평가방법) 1차(기술자격·면허 + 전공학과) → 2차(면접 + 신체)
 - 기술자격·면허증 (배점 40점): 기사이상 40점, 산업기사 37점, 기능사 35점, 일반 30~33점 등
 - 전공학과 (배점 35점): 대학 재학·졸업생 22~35점, 전문대 재학·졸업생 28~35점, 중졸~고졸 26점
- (개선방안) 기술병 모집시 학력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전공학과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불이익 해소

1 개요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YES프로젝트를 전역예정자까지 확대하고 전역 1~2개월 전 상담서비스를 제공

- * 취업성공패키지·청년YES프로젝트: 1단계 상담 → 2단계 훈련 → 3단계 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사업)
-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출소예정자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YES프로젝트 지원대상: 만 15~29세(군필자는 32세)의 고졸 미취업 청년 또는 대학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청년YES프로젝트 전역예정자 프로세스(안) ▷



- * 전 과정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 II 예산으로 수행

2 추진배경 · 필요성

- 취업을 원하는 일반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부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역 후 구직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경제활동인구로의 조기 편입 유도

3 향후 계획

- 관계부처(재정부, 고용부, 국방부)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12년 1)하고 '13년부터 시행

1] 개요

- 대학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를 도입하여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 (학사 7 1학기제, 석사 3 1학기제)
 - 학부 또는 석사과정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를 1학기 학점으로 인정
 - 국토부와 대학간 '실무교육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대학(대학원 포함)의 졸업예정자에게 단기 직무교육, 해외인턴(3개월~1년) 기회를 우선 부여

2] 추진배경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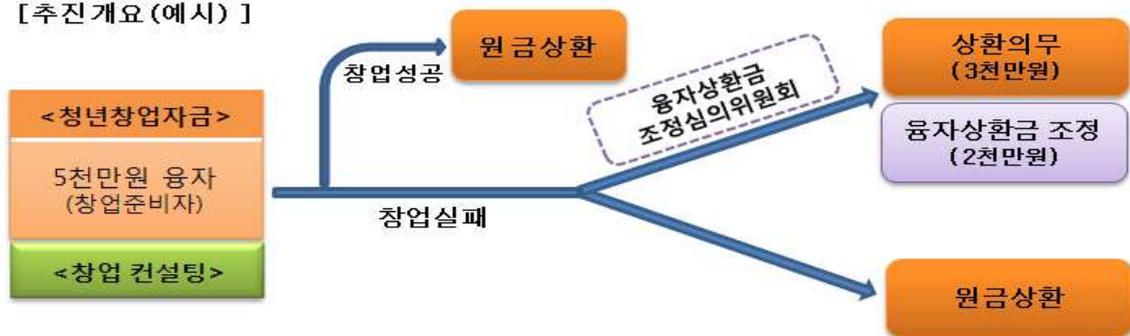
- 우수 공대졸업생은 열악한 근무여건,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해외건설업체 근무기피
 - * 건설사 국내 및 해외임금 격차: 1.배(11년), 건설사 임금평균은 자동차대비 7배
 - 해외건설업체도 대학교육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의 차이로 해외 현장에 신규 졸업생 즉시 투입 곤란
- 그동안 추진해 온 건설분야 해외인턴 제도는 단기간(3개월)에 그치고 실제 채용과의 연계 미흡(취업률 60%)
 - * 플랜트산업협회에서 '09년부터 단기(3개월) 해외현장 인턴 시행
- ⇒ 급증하는 해외 건설분야 인력수요 대응과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관련 지원 병행

3] 추진계획: '12.8월부터 실시

1 개요

- (용자대상)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미만 기업
- (용자방식) 직업(신용) 대출로 지원
- (용자조건) (기간) 3년이내 (한도)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금리) 연 2~3% 고정금리 (범위) 시설·운전자금
- (채무조정 제도) 정직한 창업 실패자에 대해 용자 원금의 2천만원(40%)까지 감면
 - * 용자상환금 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한적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 허용
- (사후관리) 컨설턴트를 멘토로 지정하여 사업계획 진행사항 점검, 타 정책자금·마케팅·컨설팅 등 연계 알선(1년)

[추진개요(예시)]



2 추진배경 · 필요성

- 창업의지는 있으나 실패시 채무상환 부담 우려로 창업을 주저
→ 창업실패시 용자상환금의 상환의무 일부 면제제도 신설

3 향후 계획

- 용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확대(500→700억원)

1 개요

-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2 주요내용

- '12년 공공기관 신규채용계획을 당초보다 1.5천명(10.9%) 증가된 15.3천명으로 확대

고졸자 채용도 당초보다 290명 확대된 2,508명으로 추진

	당초계획(A)		변경계획(B)		증감(B-A, %)	
	총채용	고졸자	총채용	고졸자	총채용	고졸자
• 1월 발표기준	11,610	2,350	15,269	2,508	629(4.5)	158(6.7)
• '12년 기관변경 반영시	13,771	2,218			1,498(10.9)	290(13.1)

* 주1,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은·기은 등 채용계획인원 930명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신규지정된 6개 기관 채용계획 61명을 가감한 수치

- 1월말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발표한 14.6천명 채용계획 보다는 4.3% 확대된 규모

3 향후 계획

-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채용 목표 달성 독려

1] 개 요

- 고졸자 채용시 하향지원한 대졸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요인을 해소

2] 주요내용

- 고졸자 우선채용 및 대졸 하향지원자 처리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고졸적합 직무에는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관련 기준 마련

※ 고졸자 제한경쟁시 제한경쟁 기준, 직무능력검사를 통한 평가 등

- 고졸자 제한경쟁시, 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실적이 없음을 증명받아 제출토록 하여 학력 검증

- 군복무자 대체채용 활성화

- 고졸자의 군입대로 인한 결원발생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복직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별도정원으로 인정

3] 향후 계획

- 하향지원자 처리, 군복무자 대체채용 등을 포함한 고졸자 채용가이드 라인 통보(7월 중)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개정시 가이드라인 및 대체채용 방법 등을 반영·규정화(12년 말)

1 개요

구분		현행	개선
실업 급여	적용대상	▪65세 이상 일괄 제외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수급자격 유지 · 65세 이상인 자의 신규가입은 제한
	보험료 징수대상	▪61세 이상 제외 (근로자·사업주 부담, 각각 0.5%)	▪61세 이상인 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징수
고안 · 직능	적용대상	▪제한없음(65세 이상도 적용)	현행과 동일
	보험료 징수대상	▪61세 이상 제외 (사업주 부담, 0.3~0.8%)	▪61세 이상인 자도 징수

2 추진배경·필요성

- 최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보험료 납부에 상응하는 혜택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확대 필요

* 64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속 납부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도 기여 가능

3 향후계획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12년 하반기)

1 개요

- (사업목적) 지자체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정보와 사무공간 등의 제공을 통하여 시니어의 비즈니스 창출 도모
- (지원내용) 입주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상담, 창업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및 세미나 등 시니어 창·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운영현황

- 총 11개 시니어 비즈플라자 설치·운영

* '11년 7개 (수도권 5개, 지방 2개) → '12년 11개(수도권 5개, 지방 6개)

구분	개소일	세부지역	구분	개소일	세부지역
서울 (3)	'11. 2	은평구 비즈플라자	대구	'11. 8	수성구 비즈플라자
	'11. 2	노원구 비즈플라자	광주	'12. 5	광주시 비즈플라자
	'11. 3	마포구 비즈플라자	강원	'12. 5	춘천시 비즈플라자
경기 (2)	'11. 3	수원시 비즈플라자	경북	'12. 5	칠곡군 비즈플라자
	'11. 3	의정부 비즈플라자	울산	예정(8월)	울주군 비즈플라자
부산	'11. 2	사하구 비즈플라자			

3 향후계획

- 시니어 비즈플라자 입주지원대상 확대 ('12년 100→'13년 500명)

1] 사업 내용

- '09년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취업애로 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시범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상담(1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최장 1년간 집중 지원

2]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 취약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 * 영세자영업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참여가능)

3] 향후계획

-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연매출 8천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I 지원
 - 연매출 8천~15천만원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II*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I 과 달리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지침 개정('12년 1)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

① 추진배경

- 취업시장의 학력과 일자리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학력과잉투자를 방지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명 부족,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 남음
-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 분위기(학벌사회→능력사회) 확산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
 - ※ 특성화고 취업률 : 16.7%(09년) → 19.2%(10년) → 25.9%(11년) → 38.1%(12년) → 60%(13년 목표)

② 개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방안 도입

③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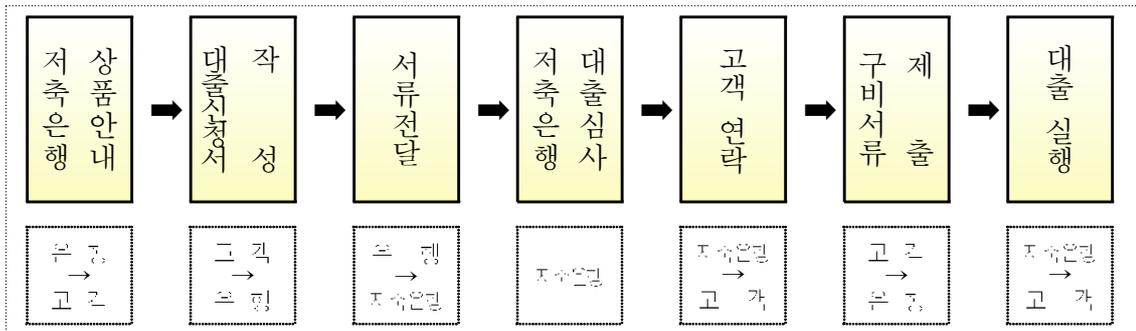
-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반영

**6. 가계부담,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1 개요

- (내용) 저축은행과 은행간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 신청서류 접수 등 대출모집 업무 대행

<은행 저축은행간 연계대출 실행 예시>



- (연계 대상)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
- (연계범위)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신청자 대상, 저축은행의 동일 영업구역내 은행(점포)간 연계대출로 제한

2 기대 효과

- (저축은행)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을 확대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로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 (금융이용자)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 폭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대부업·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

3 추진계획

-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7월 중 시행 추진

* 소비자가 은행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요 핵심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 교부 등

1 현 황

- 현재 대출모집인은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
 - * 대부업체의 중개업자는 대부업법상 근거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개업자(대출모집인)은 법적 근거가 없음
 -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감독이 불가능
 - * 현재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문제 발생시 금융기관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간접적인 관리방식
-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저축은행 등의 높은 서민대출 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 대출모집인 수수료: 저축은행 7%대, 할부금융 5%대

2 개선 방안

-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며,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
 - * 상환능력 등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대출상품 권유 금지
- 대부중개업자 등(대출모집인 포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대부업법 개정)

3 추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대부업법 개정 재추진('12.7월 중 국회 제출)
 - *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음

※ 5.31일 기 발표한 내용

① 피해신고체계 지속유지와 보완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구제 활동 강화

② 서민금융 지원요건 개선

- (공동) 소득·부채 기준 등 지원요건의 일정범위(예 : 요건 상한의 10%)내 신청자는 희생가능성·자활의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유형별 개선 사항

제 도 명	현 행	개 선
바뀌드림론	○ 과거·현재 연체자는 지원불가	○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직장 3개월 계속 근무	○ 동일직장 재직요건 폐지
	○ 고금리채무 성실상환 요건 (6개월 이상)	○ 성실상환기간 단축 (6→3개월)
	○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 불가	○ 불법(미등록)업체로 인한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기소 등) 지원대상 포함
햇살론	○ 3개월 연속으로 소득발생	○ 소액대출(700만원)에 대해 재직확인서 사업사실 확인서 제출시 지원허용
미소금융	○ 자산대비 부채비율(50%)	○ 자산대비 부채비율 완화(60%)
	○ 자산요건 기준 * 대도시(13.5천만), 중소도시(8.5천만)	○ 자산요건 기준 상향 * 대도시(1.5천만), 중소도시(10천만)
신용회복	○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분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했으나, 대부업체는 일부 미가입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유도·확대

③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 환수(법정금리 초과분)방안 추진(181분기)
- 대부업자 등록과 관리·감독 체계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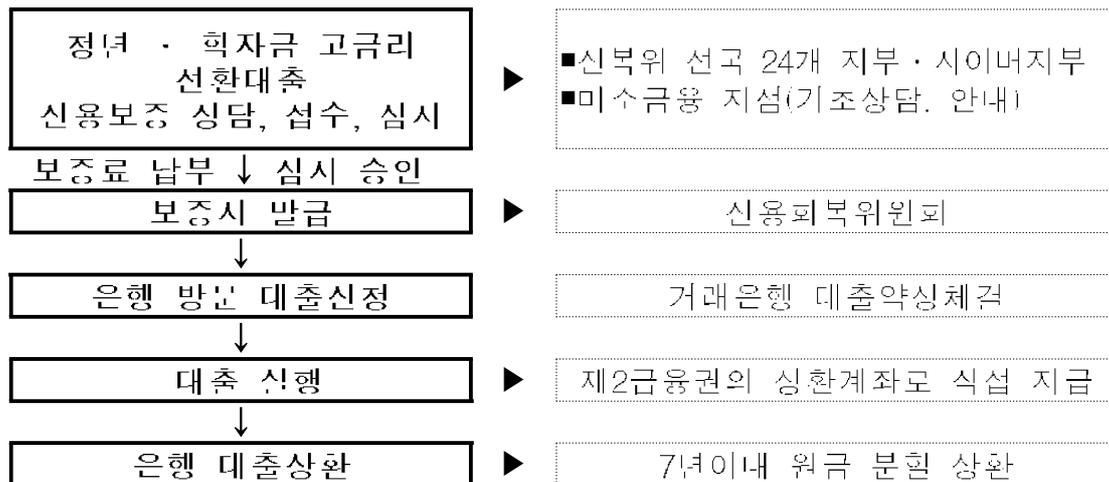
④ 복지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복지·취업 사업 등과 연계를 추진

1] 개요

- (지원규모)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보증배수 5배)의 전환 대출 공급
- (지원대상) ① 대학(원)생의 학자금 용도 고금리(20%↑) 채무 또는 ② 저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층(20~29세)의 고금리 채무
- (대출한도) 1인당 1,000만원
- (금리) 6.5% 수준
- (상환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한도) 원리금 100%

전환대출 지원절차



2] 추진 계획

- 6.18일부터 전국 미소금융지점(154개)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접수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 5500(홈페이지 : www.ccrs.or.kr)

① 개요

- (지원규모)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으로 지원
-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대학생
 - i)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무등급자 포함)
 - ii) 저소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 및 지원여부 결정
- (금리) 4.5% 수준
-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② 추진 계획

- 5.31일부터 전국 미소지점(151개)에서 대출 실시

① 추진 배경

-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등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지원중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였으나, '12년 지원한도 조기 소진 예상
- 주택거래 정상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필요

② 개선방안

-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형 II 지원금리, 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확대

소득요건 상향(4,500만원 →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시가 3 → 6억원 이하), 지원한도(1 → 2억원) 확대 기조치, 하반기중 금리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보금자리론 개요 ▷

구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기본형	우대형 I	우대형 II	
				종전	개선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제한없음	2,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금 리 (만기)	4.2% (20년 만기)	4.6~4.85% (10~30년)	3.6~4.3% (10~20년)	4.2~4.15% (10~30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
대출규모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5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1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1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1 개요

-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하여 일정요건하에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50% 감면** 시행중

* 9억원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시, ** 기본세율: 4%, 9억원 이하 1주택자: 2%

-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감면 지원

2 주요내용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이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 취득세

1세대 1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몰('12년말) 연장 검토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 검토

(2년 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3년 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3 향후 계획

- '12.6.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예정(양도세)

- '12년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취득세)

1 추진 배경

- 임대차 계약 기간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과도한 추가 임대료나 부대비용 요구로 임차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 빈번
 - ※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시 일부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도배·장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세 전액지급을 요구
- 중도 계약 해지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임차인-임대인 분쟁 소지

2 주요 내용

-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비용분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3 추진 계획

-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추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 현 황

- (지원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월세지급액 등의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 '12.1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삭제
- 총급여 요건 완화(연 3천만원 → 연 5천만원)

2 개선방안

- 월세 비중 증가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등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 추진

3 향후 계획

-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① 추진 배경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례 발생
 - ※ (미반환 사유) 신규 세입자 미입주, 집주인의 반환자금 부족 등
-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반환소송 등 법적 보호장치가 있으나, 신규 임차(구입)주택 마련 등에 있어 임차인 불편*을 해소하는데 충분치 못한 측면
 - ※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상담건수는 '11년 2,781건에 이릅니다

② 개선방안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의 주거이전 지원, 불편 경감을 위한 보증 지원(주금공)
 - 보증대상 · 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보증재원 확충 추진

**7. 미래준비,
서비스산업 · 녹색성장 등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 (정의)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
- (도입목적)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국가 감축목표 : 2020년 BAU(예상 배출량) 대비 30% 감축 ('09.11 확정·발표)

〈관리업체 지정기준〉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1000t)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2 추진배경·필요성

- 현 목표관리제가 기업들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지 못하여 목표관리제를 개선할 필요
 - * 업체별 목표(배출 허용량) 과다 설정, 목표 미달업체에 대한 페널티 미약 (과태료 수준이 낮고 목표대비 초과 배출량과 무관하게 정액 부과 등)
- 효과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년 BAU대비 30%)과 전력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활력 제고

3 향후 계획

- 목표관리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온실가스 감축 이행관리강화 방안에 포함시켜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12. 하반기)

1 개요

- '12.5.14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11.1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시행령 제정 필요

2 시행령 제정방향

-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산업 발전 등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되,
 -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3 시행령 주요 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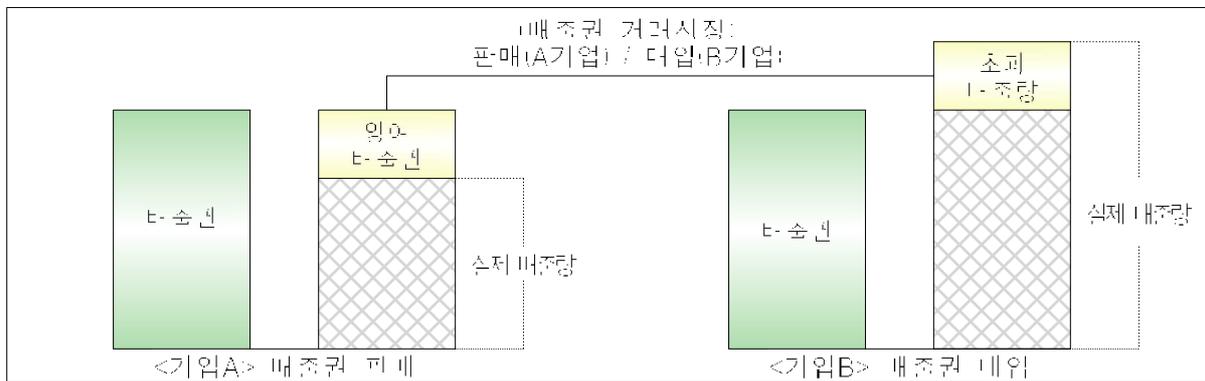
- (무상할당비율) 1차계획기간(15~17)중 무상할당비율은 95%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 (배출권 할당기준)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조기감축실적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구체화
- (민감업종 선정기준) 무역집약도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큰 업종은 100% 무상할당 가능
- (할당위 간사위원, 주무관청) 할당위 간사위원*(차관급 1인)과 거래제 주무관청** 담당부처를 시행령으로 규정
 - * 할당위원장(재정부 장관)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 수립 준비 등 할당위 사무 처리
 - **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배출권 할당, 배출권거래소 지정, 시장 안정화조치, 과징금 부과 등 거래제 집행업무 담당

4 향후 계획

- 공청회(8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11월 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

1] 개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2] 도입 배경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 <cost savings by trading>)
 -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 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 절감 가능
-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로 전환
 -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
 -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1 주요내용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12년말) 연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₁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₁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 추진배경·필요성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커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

3 향후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1 주요 내용

-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투자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10%) 적용
 - *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소화합물(HFCs, PFCs, SF₆) 등의 감축시설
 - ** 현행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2 추진배경·필요성

-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지원 및 저탄소 녹색산업 지원
 - * 국가 감축목표 : 2020년 BAU(예상 배출량) 대비 30% 감축 (09.11 확장·발표)
- '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을 앞두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를 유도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14 제정)

3 향후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2.12) 및 시행규칙(13.3) 개정

① 주택연금 현황

-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을 의미
-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현재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현행 주택연금 가입요건

대상연령	·부부(주택소유자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보증기간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주택연금 지급방식	·순수종신형: 매월 균등금액을 평생 지급 ·종신흡합형: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가능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 '07년 제도 도입 이후 신규가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연도별 신규가입 현황

	'07	'08	'09	'10	'11	'12.1~5월	합계
신규가입(건)	515	695	1,124	2,016	2,936	1,994	9,280

② 제도개선 방안

- (가입대상 확대)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
 - ※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보다 1.7세 높은 고령자 부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요건을 완화
- (세제지원) '12년말 일몰 예정인 주택연금 가입자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 혜택에 대한 일몰연장 추진

기타 참고자료
<경제활력 제고>

① 산업계 휴가분산

- 7월말~8월초에 집중된 산업계의 휴가를 하계 피크기간인 8월 3~4주로 이전하여 피크기간중 예비력을 추가 확보

※ 휴가 집중기간인 7월말~8월초 예비력은 850만kW이나, 하계 최대피크기간인 8월 3~4주 예비력은 150만kW에 불과할 전망

8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시행 기간 : 8월 3~4주

◆ 감축 시간 : 11시~12시, 13시~17시

◆ 감축 기준 : 평시 사용량의 30% 감축

② 피크시간대 조업조정

- 한전과 사전 약정한 대규모 업체 대상, 긴급감축 시행전 (일주일~하루전) 사전예고를 통해 감축대상 및 감축량 모집
 - 현재, 철강, 시멘트, 제지업종 등 4,000여개의 대규모 수용가가 참여중이며 200만kW 수준의 전력사용량 감축
- 요청시간(피크시간, 30분 단위)중 조업조정 등을 통한 절전 시행시, 절감실적에 따라 보상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 2.21일 기 발표한 내용

①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 ① 일반대출(정책자금 제외)의 예대출 상한(80%) 도입(12.3/4분기 시행)
 - * 예대출(정책자금대출 포함, '11.9월말): 단위농협 74.8%, 단위수협 80.0%
- ② 신규 고위험대출*의 총당금기준 상향(12.3/4분기 적용)
 - * 일정규모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등
- ③ 비조합원 신규대출 한도(연간)를 신규대출 총액의 1/3로 일원화
 - 현재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단위수협은 '15년부터 적용
 - * 현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농협) 신규대출의 1/2, (수협) 대출한도 미적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규대출의 1/3
 - * 현재 비조합원 대출비중: 단위농협 33%, 단위수협은 51% 수준
- ④ 조합원 간주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제외
- ⑤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을 서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
- ⑥ 상호금융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강화방안(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시 발표)의 유예기간(~13.6월)중 강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
 - *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15.7월까지)
 - (예) (요주의여신 기준) 6개월미만 연체 → 3개월미만 연체
(요주의여신 충당금) (현행)1% → ('13.7월)1% → ('14.7월)7% → ('15.7월)10%

②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 ①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 (정상) 0.75% → 1.0%, (요주의) 5% → 10%, (회수의문) 50% → 55%
- ②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 보험사·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및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 제한
 -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 추가

1 개요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를 병행 지원

※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12.6.22일 시행)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추진배경 · 필요성

○ (기업)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기업에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양화)

○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규 보증여력과 투자재원을 확보

3 향후 계획

○ '12년중 보증연계투자를 1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

① 카드 수수료를 현황

- '07년 이후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최고 수수료율 4.5% → 1.8%)
 - 금년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도 대폭 확대(연매출 1.2억원 → 2억원 미만)
- 그러나, 비합리적인 업종별 차등적용,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에 대한 불만이 지속

②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

- ①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
- ② 전반적인 가맹점수수료 부담의 경감
- ③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대폭 축소(현 3%p, 1.5~4.5%)
- ④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③ 향후 계획: '13.1월부터 개편안 시행

-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 마련: ~'12.7월
 -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과 수수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시
- 전산시스템 개편 등 체계 개편 준비: ~'12.12월

1] 개요

- '10년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외환건전성부담금¹⁾, 선물환포지션제도²⁾,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³⁾)를 시행

- 1)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에 부담금을 부과('11.8월)
- 2) 은행부분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대해 上限을 설정('10.10월 시행, '11.7월 한도를 20% 축소, 국내은행: 자기자본의 50%→40%, 외우지섬은 250%→200%)
- 3)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국채·통인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양도차익의 비과세 특례폐지('11.1월)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탄력적 운영

*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 검토

2] 추진배경 · 필요성

- 유럽재정위기 심화 우려 등 대외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커, 자본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에 모두 대비할 필요

단기적으로 추가 규제를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3] 향후 계획

- 대내외 여건 점검 및 필요시 선물환포지션제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 검토(연중)

1] 개요

- 금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41개)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예정(공운법 §39의2)

※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재무현황, 재무전망, 부채 등 재무관리계획 등

2] 추진배경 · 필요성

-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

3] 향후 계획

- 기관 자체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장에게 제출받은 후, 9월말까지 예산 관련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41개)
공기업 (22)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 기관 (19)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예탁결제원

1] 개요

-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업, 초기벤처의 자금 조달 통로 다양화를 위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투자 약정(주식·채권 등 매수)을 통한 소규모 자금 조달을 제도화

2] 추진배경·필요성

- 1인(개인) 창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이 어려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 공급원으로 한계**

* 은행자금 83.3%, 정책자금 10.6%, 회사채 3.2%, 주식 1.1% 등(중기중앙회, '11)

** VC 투자는 평균 규모(약 20억원)가 커지고, 주로 성장단계(창업 3년 이상)에 집중, 엔젤투자도 크게 감소('00년 5,493억원 → '10년 326억원)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제도적 근거 미비

문화·예술 후원이 아닌 창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증권 발행 등과 관련한 법령의 규제로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

- 미국은 「JOBS ACT('12.4.5)」를 통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

3] 향후 계획

-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해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13년 상반기)

1] 개 요

- 관세청은 원산지판정, 서류발급 등의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간편판정 FTA-PASS 개발
 - * 6.1일부터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
 - 원산지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안내에 따라 자료만 입력하면 수출품의 원산지판정과 증명서 발급이 자동으로 처리

2] 추진배경 · 필요성

- FTA 체결 효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FTA 활용 취약군인 영세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 배양이 필요
-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의 현실에는 부적합
 - 제조공정, 원재료 등이 단순한 영세기업은 기존 시스템 사용시 절차 및 입력항목 등이 과다하여 사용에 애로 호소
 - * 단계별로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
 - 특히 대다수 영세기업은 FTA 전담직원 없이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
 - *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 및 HS code 등에 대한 설명·안내 미흡

3] 향후 계획

- 간편판정 FTA PASS 관련 홍보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

1]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 조치* 면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다음과제 선정평가지 감점부여 등

2] 필요성 및 추진경과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문화를 조성

연구의 불확실성이 크고 창의성이 보다 중요한 기초연구 분야에 우선 도입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5.11일 공포, 7.1일 시행)

-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성실실패 제도 적용 근거 마련

3] 향후 계획

- 기초연구사업 성실실패 운영가이드라인 마련(12.하)

- 응용·개발연구 사업에 대한 확대적용 여부 검토(12.하)

1] 개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공표를 추진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
- * '10년말 기준 255개소(국가기관 1, 학교 15, 기업 236)

2] 추진배경·필요성

-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1.12.31. 공포, '12.7.1. 시행
- 명단 공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 필요
 -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실태조사, 명단공표 절차 등
 - * 공무원, 변호사, 근로자·사업주·공익대표, 보육전문가 등 5인 이상

3] 향후 계획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12.6월)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제 시행('12.7.1)
- 의무이행 여부 실태조사('12.9월 기준), 명단 공표 사업장 선정('12.11~'12월) 및 명단 공표('12.12월)

① 성공불용자 제도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탐사사업에 한하여, 사업 실패시 용자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용자제도

② 추진배경 · 필요성

- 그간 총 61개업체 · 203개사업(석유 · 가스 187개, 일반광물 16개)에 대해 25.8억불 지원, 15개 사업 성공으로 회수율*은 161.6%

* 회수율(161.6%) - 성공사업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1,086백만불)/성공 및 감면사업 용자원금(672백만불)

- 그러나, 동 사업의 사중손실¹⁾ 가능성과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 별도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자원개발에 투자할 기업에 대한 지원

- 실패시 감면비율은 높은 반면, 성공에 따른 특별부담금은 낮다는 비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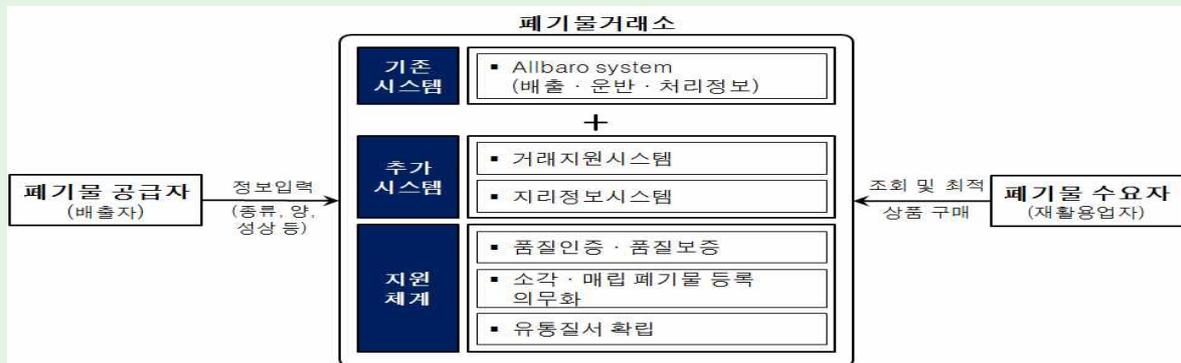
* 실패시 90~100% 감면, 성공시 수익의 15%(광물 1%) 특별부담금 징수

③ 향후 계획

- 성공불용자 개선방안 마련(12.6~7월)

1 개요

-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중고물품의 재활용(reuse, recycle)을 활성화하기 위한 폐기물 거래·유통·품질 정보체계 구축
⇒ 폐기물 공급자 수요자간 최적의 맞춤형 거래장터 제공



- ※ 폐기물 거래소를 통해 자원순환률을 5% 향상시킬 경우, 연간 경제 효과 약 3조 8천억원(추정)

2 추진배경·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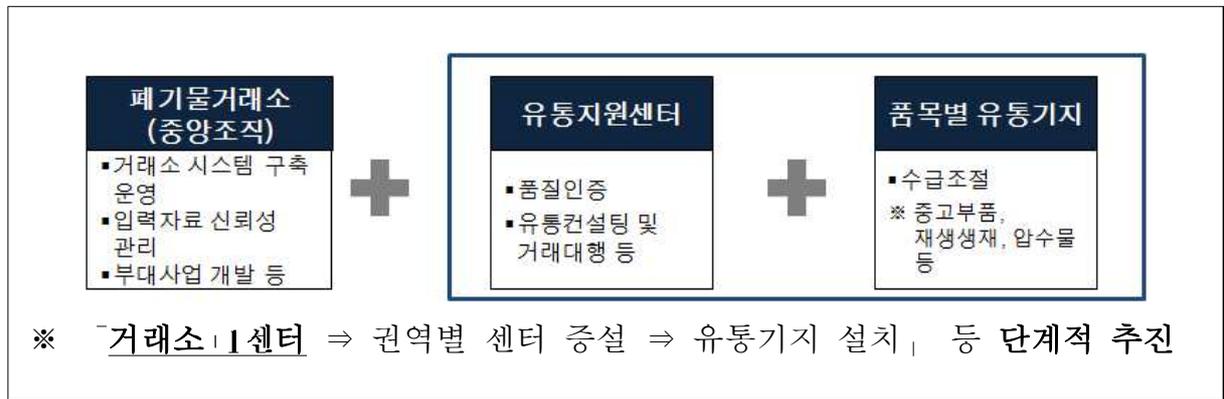
-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 현행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적법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치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돕는 정보 제공 역할 미흡
- 폐자원 공급 수요자간 정보 부재로 상당량의 가치 있는 자원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
 - ※ '10년 폐합성수지 발생량(1,079천톤) 중 31%(335천톤)가 소각·매립되고 있으나, 이중 상당량은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 '12.1월 폐기물거래소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95.4%(12,487명 중 11,910명)가 '거래 시스템 구축시 이용하겠다'고 응답

※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자원순환관련 기본계획에서도 전자상거래시스템 도입 필요성 인식

⇒ 소각·매립되거나 단순 재활용되는 폐자원의 활용기회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폐기물거래소」 구축 추진

3] 향후 계획

○ (거래소 구성) 중앙조직인 폐기물거래소, 권역별 조직인 유통지원센터, 품목별 유통기지 등 3개로 구성하여 전국단위의 거래 체계 구축



○ '15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약 36만개소)가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

1단계(기반구축)	2단계(안정화)	3단계(고도화)
시범구축·운영	폐기물거래소 본격 운영	거래소 확대 운영
폐합성수지류, 폐가전·가구 및 유아용품	모든 폐기물, 중고제품 및 재활용제품 ※품질보증 방안 마련	품질인증(보증)체계, 컨설팅 기능 등 부가서비스 확대
'12년~'13년	'11	'15

※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거래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12년 기본 정보시스템 구축 후 폐합성수지 폐기물과 폐가전·가구 및 유아용품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별첨

폐기물거래소 확대운영 로드맵

구분	추진기조	추진과제	
		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기반마련
1단계 (기반 구축)	'11 도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GPS기반 폐기물 운반차량
	'12 폐기물거래소 시범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거래소 시스템 시범구축 및 단위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유비쿼터스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 ▪폐기물거래소 구축 계획 수립 ▪법령·제도안 마련, 입법절차 진행
	'12 하반기 폐기물거래소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거래소 구축, 시범운영 *유통지원센터 설치 ▪시스템 증설 및 추가도입 *이B서버 및 WAS서버 등 ▪프로그램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발전방안 마련 *품질 인증·보증체계 구축 *품목 및 사용자 확대 방안 *신유통 채널 모델 개발 *유통기지 구축 방안 *부대사업 개발 *수수료 체계 등
2단계 (안정화)	'13 폐기물거래소 본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거래소 구축·운영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 ▪시스템 확대 구축 *재해복구시스템 *GPS, 항온항습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발전방안 시행(1년차)
	'11 폐기물거래소 본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거래소 구축·운영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 ▪시스템 확대 구축 *민원상담체계 구축 *품목확대에 따른 장비 및 시스템 추가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발전방안 시행(2년차) ▪거래소 발전방안 변화관리 계획 수립
3단계 (고도화)	'15~ 폐기물거래소 미래상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거래소 구축·운영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고도화 *차세대 BPR TSP 수행 *민원상담체계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미래비전 수립 및 성과평가(3년차)

기타 참고자료
〈서민생활 안정〉

1] 개요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와 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 * 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는 24개 업체에 이용자수는 72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5,279만명의 1.37% 수준
 - * SKT : 아이즈비전 등 5개 업체, KT : CJ헬로비전 등 10개 업체, LGU : 씨엔엠브이엔오 등 9개업체

2] 추진배경 · 필요성

- 시장이 성숙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망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므로 주파수와 망이 없이도 시장진입이 가능한 이동통신재판매 제도를 도입(10.9월)
 - * OECD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MVNO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Korea :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OECD(2007))
- 다양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이통3사 중심의 소극적 마케팅경쟁(단말기보조금)을 넘어 요금·서비스 경쟁촉진 도모

3] 향후 계획

-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주요 부가서비스를 재판매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이통사의 **관련시스템 개발** (12.8월)
 - 국제로밍은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주요국(美·中·日)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지속적 확대 추진
- 영업전산보유 재판매사업자와 이통사간 **번호이동** 시행 (12.10월)

1] 지정 결과

- 10,626개 업소 신청(2.27~4.10) → 7,132개 선정(6.14)
 기존업소 재지정 2,301개, 신규 4,831개 / 4,635개 증가
 신규지정 4,831개 중 외식업4,056개(84%), 기타 개인서비스업 775개(16%)
 ※ 청사주변 착한가격업소 693개(중앙청사 11, 과천청사 15, 대전청사 41)

2] 지정 절차

- 공고 및 신청(2.27~4.10) → 현지실사·평가(4.12~4.30, 시군구) → 적격 여부 심사(5.1~5.20, 시군구) → 협의·조정(5.21~5.31, 시도·행안부) → 현장 확인(6.1~6.8) → 6.14일 선정·통보

3] 사후 관리

- (이용촉진) 소비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이용활성화 운동 전개
 - 정부부처·자치단체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적극 권장
 -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추진
 - 착한가격업소 웹사이트 개선(업소사진 등재) 및 온라인 홍보 지속추진
- (관리강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매월 시·군·구별 현장 모니터링 실시(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
 - 재심사 후 부적합(가격인상, 폐업, 포기 등) 시 지정취소, 표찰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인센티브 지원) 지자체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대출금리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1] 개요

- 전국 공영도매시장(33개)은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 산지 지방도매시장, 소비지 지방도매시장, 중앙 도매시장
- 앞으로 유형별로 기능을 특화하여 활성화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 * (예시) 산지 지방도매시장: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수집기능 강화
 - 소비지 지방도매시장: 인근 소비지로의 효율적 분산기능 강화
 - 중앙 도매시장: 물류·시장정보기능 강화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는 정체 또는 감소 추세
 - * 도매시장 거래 비중(%): ('07)50.2→('08)48.6→('09)49.8→('10)49.3
 - 공영도매시장간의 경우 일부 대형시장(예: 서울 가락시장) 집중화 경향으로 중소형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감소 및 운영상 애로* 발생
 - *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15개소가 적자운영('10년 기준)
- ⇒ 도매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강화 추진

3] 향후 계획

- 공영도매시장의 입지·유통 환경을 정밀분석하여 합리적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09월)
- 유형별 맞춤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12월)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
 - * 예산규모(억원): ('11) 508 → ('12) 550

1 개요

- 현재 국토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CO₂G)*」에 따라 지자체별로 택시 운영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 운영중
 - ※ 지자체별로 택시가동률, 탑승률 등을 고려하여 '10~'11년(5개년) 택시 총량제 운영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함
- 앞으로는 택시총량한도 변경시 증차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을 경형택시(1,000cc이하)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유류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해 경형택시 확대 필요성 제기
 - 경형택시의 운행거리(km)당 발생원가(930.33원)는, 중형택시(1,135.27원)의 82% 수준
 - * '10년부터 시범운영중(성남시)인 경형택시의 기본요금은 1,800원으로, 중형택시(2,300원)의 78% 수준
 - 경형택시 1대당 11l LPG 소모량(16.23l)과 탄소배출량(82.13kg)은 중형택시(75.77l, 135.10kg)의 61% 수준

3 향후 계획

- 경형택시에 대한 인세티브 지원방안을 포함한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마련 ('12.下, 국토부)
-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개정 ('13년)
- 지자체별로 연구용역을 거쳐 「'15~'19년 택시총량제 운영계획」을 마련 ('14년)하고 이에 따라 '15년부터 증차분의 일정비율을 경형택시로 도입

1] 개요

- 고령자(55세 이상)가 사업주에 신청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년 이상 근무한 고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 사유(예: 경영악화, 대체 인력 부족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규정
 - ※ 근로시간 단축후 주당 근로시간은 주40시간제 기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
 - 근로시간 단축후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내 동종·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 근로시간에 비례한 근로조건 적용 외 불리한 처우 금지

2] 추진배경·필요성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하여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 고령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퇴직 하면서 임금피크제 등과 병행하여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을 연장
 - 근로시간 단축중 교육·재취업 준비 등 은퇴 이후 준비 병행
- 기업 입장에서는 연공급 체계에 따른 고령자 고임금 구조를 개선 하고, 적정 비용으로 더 오랜 기간동안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 활용

3] 향후 계획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 실시 (4월)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6~7월)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요와 문제점

- (개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 (정년연장형)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감소시 지원
 - * 피크임금을 100만원으로 가정시 임금이 70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10만원 지원
 -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 정년후 3개월내 재고용되면서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소시 지원
 - * 전일제근로자(주 40시간, 피크임금 100만원)가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감소하고 임금이 25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25만원 지원
- (문제점)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실 외 근로자 대표 동의를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여 임금피크제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과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별도 요건이 필요 없음

② 개선방안

- 임금피크제 확산 차원에서 지원금 지원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 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까지 확대
- 이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 등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사실 확인만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가능

③ 향후 계획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 실시 (4월)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6~7월)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별첨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11.6월) 결과

1 100인 이상 사업장(10,029개소)

- 임금피크제 ‘실시 중’ 사업장은 12.3%(1,232개소)로 ‘도입 준비 중’ 2.8%(283개소)과 ‘추후 도입계획 있음’ 15.5%(1,552개소) 사업장을 포함하면 약 30.6%가 도입에 긍정적
 - * 100인 이상 사업장 연도별 도입율(%): (‘05년)2.3→(‘06년)3.3→(‘07년)4.1→(‘08년)5.7→(‘09년)9.2→(‘10년)12.1→(‘11년)12.3(1,232개소)
 - * 100인 미만의 경우 ‘실시 중’인 사업장이 1.9%(20,615개소)로 ‘도입 준비 중’ 0.6%(6,216개소)과 ‘추후 도입계획 있음’ 3.6%(38,213개소)를 포함하면 약 6.1%가 도입에 긍정적
- (유형별) 재고용형이 35.6%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형 35.4%, 정년보장형이 27.1%, 근로시간단축형이 1.8%를 차지

< ‘10년 및 ‘11년 유형별 비교 >

구분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11년	27.1%	35.4%	35.6%	1.8%
‘10년	22.3%	33.2%	44.5%	-

* ‘10년의 경우 실시 중 및 도입 준비 중인 사업체까지 포함한 수치이나, ‘11년에는 실시중인 사업장만 포함

2 전체 사업장(1,079,506개소)

- 임금피크제 ‘실시 중’ 사업장은 2.0%(21,817개소)로 ‘도입 준비 중’ 0.6%(6,530개소)과 ‘추후 도입 계획 있음’ 3.7%(39,795개소) 사업장을 포함하면 6.3%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
- (산업별) 전기·가스·수도사업(31.0%)이 가장 많고, 금융 및 보험업(9.1%), 운수업(5.9%), 광업(1.5%), 하수·폐기물처리업(1.2%), 제조업(2.5%) 순으로 실시중
- (규모별) 300인 이상이 16.2%(324개소), 100~299인 11.3%(907개소), 30~99인이 8.3%(2,901개소), 10~29인이 5.2%(6,182개소), 5~9인이 2.4%(1,351개소), 1~4인이 1.0%(7,178개소) 차지
- (유형별) 정년보장형(39.9%), 정년연장형(33.5%), 재고용형(22.4%), 근로시간단축형(1.2%) 순

1] 주요 내용

- (현황) 현재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확충 차원에서 대학내 컨설팅 대학원 개설·운영을 지원중
 - * 서강대, 한성대('08 지정), 한양대, 금오공대('09 지정) 매년 총 20억원, 각 컨설팅 대학원 인건비와 운영비의 50%인 5억원씩 지원 (5년간 지원)
- (개선방향)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 전문직 은퇴자를 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활용
 - 현행 컨설팅 대학원에 전문직 은퇴자(대기업 또는 특정 전문분야에 일정 기간 재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과정* 개설
 - * 예) 주말 비학위 과정, 야간 학위 과정 등
 - 인사·재무 컨설팅 등 전통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을 관세 등 FTA 전문 컨설팅, 창업 컨설팅 등 전문직 은퇴자 활용도가 높은 과정으로 다양화

2] 기대효과

- 전문직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퇴직후에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문직 은퇴자 등이 퇴직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3] 향후 계획

- 컨설팅 대학원내 특화교육과정 개설 방안 마련('12.하반기~)

1 지원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직전년도 대비 생산량 10% 이상 감소
직전년도 대비 재고량 50% 이상 감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임금을 삭감한 경우

2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 (중소기업)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X 상시근로자수'의 50%
-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 (1,000만원 한도)

3 추진계획

- 금번 세제개편안에 일몰연장을 반영할 예정

① 시장과열시 도입된 주요규제 현황

제도명 (도입시기)	개요 (도입시 현황)	현행
종합부동산세 (‘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 세대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1~3% 세율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 공제 세율 경감 : 0.5~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주택 ‘03.10 2주택 ‘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1가구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일반세율 : 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년말까지 중과중지 중과폐지 추진중 (12년중 법개정안 제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격 총액 - (착수시점 주택가격 총액 + 개발비용 + 정상 집값상승분) : 부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간 부과중지 추진중
분양가상한제 (‘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직접 규제 -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공사비지수 - 택지비 가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추진중 법개정 전에도 실투입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택지비, 건축비 등 전면 재검토 정비 추진
투기과열지구 재도입 (‘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 투기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강남·서초·송파 (11.11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면해제
투기지역 도입 (‘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 DII·LTV 비율 상향, 양도세 중과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강남·서초·송파 (12.5 해제)를 마지막으로 전면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재도입 (‘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권 또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완화중 (12.5.10대책: 수도권 공공택지 17년 → 1년 등)
재당첨 제한 (‘0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 당첨시 일정기간 동안 향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추진중 (127 주택공급규칙 개정)

1 개 요

- 7개 질병군*에 대해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

- 1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 및 부속기 수술
- 2 적용방식: (현행) 02년부터 선택적 참여 → (향후) 의무 적용(당연적용)

- 포괄수가 적용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은 감소하고 입원 전에 진료비 수준도 파악 가능

* 7개 질병군 평균 본인부담금 21% 인하, 연간 100억원 경감 가능

포괄수가제 이후 진료비 변화 (단위: 원)

7개 질병군	개정 포괄수가	기존 행위별 수가
전체	300,434	379,728
- 백내장 수술	177,281	237,546
- 편도수술	150,599	169,591
- 맹장수술	385,219	423,033
- 탈장수술	213,837	292,979
- 치질수술	161,318	190,109
- 자궁적출술	396,910	502,386
- 제왕절개술	295,251	397,169

* 자료: 보건복지부

2 추진배경·필요성

-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불필요한 진료·검사를 줄일 수 있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 가능

* 개별 진료 행위, 검사 양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

3 향후 계획

- 병의원급은 7월 1일부터 적용, '13년 7월 종합병원 시행 예정

① 개요

-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운용대상) 납입금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 (세제지원)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② 추진배경 · 필요성

- 서민·중산층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 국내 장기투자 저변을 확대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③ 향후 계획

- '12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① 개요

-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 '06년 근로자 가구 중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를 계획

'12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무자녀가구에게도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도 인상('06년 70만원 → '08년 120만원 → '11년 200만원)

'12년부터 일부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게도 지급

② 추진배경 · 필요성

- '14년 귀속분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한 확대적용이 예정된 바, 세부 적용기준 마련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및 탈기초수급 유인을 강화

③ 향후 계획

- 사업자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1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1 개요

- 결제승인, 카드발급 등 전자바우처* 운영을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수수료 없는 정부 자체운영체제로 전환('12.7월)

* 규모 : 노인돌봄 등 6개 사업, 이용자 연간 65만명, 예산 8천 8백억원

2 추진배경 · 필요성

- (수수료 부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서비스 제공단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 현행 수수료율(1.37%) 유지시 제공기관이 부담 수수료는 연간 100억원

- (낮은 확장성) 결제기능이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카드·단말기 등 결제수단의 탄력적 적용, 타부처·지자체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시성 있는 수용이 곤란

3 향후계획

- (자체운영체제 전환) 6개 사업의 운영체제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운영체제로 전환('12.7월)

- (결제수단 다양화) 바우처 카드 결제방식 외에 SMS 문자 인증방식 도입('12.7월) 및 스마트폰 결제 방식 추가('12.12월)

- (바우처방식 확대) 공급자 지원방식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도 자체 지원사업에 바우처 방식 도입('13.2월)

* 규모 : 총 115억원, 11,300명 대상(서울시는 '10년부터 시행중)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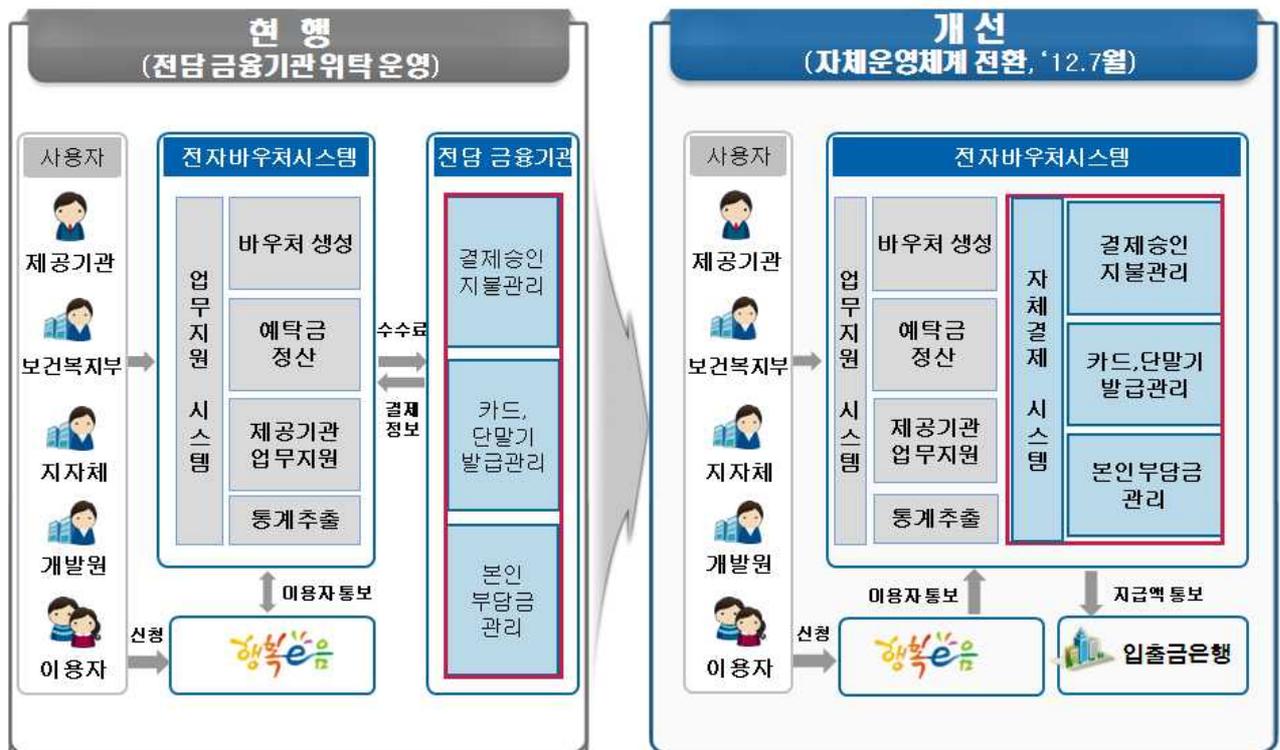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업명	'12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현황('11.12월 기준)		
		제공기관수	제공인력	이용자 수
소 계(6개 바우처)	8,516	4,850	55,773	654,987
1. 가사간병방문	196	316	2,881	10,539
2. 노인돌봄서비스	826	921	9,519	37,728
3. 산모신생아도우미	372	305	2,756	57,815
4. 장애인활동지원	1,520	819	23,653	35,371
5. 장애아동 재활치료	718	996	1,126	39,582
6. 지역사회서비스	1,881	1,163	12,838	173,922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1.11월 우선 자체운영체계 적용

2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 개편 모형도



1] 개요

- (현황) 10세 이상 남아(男兒)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숙식과 상담, 피해회복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전국 13개소에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

·11년도 8개소(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2년도 5개소(서울, 대전, 충남, 전남 목포·여수)

※ 미선정 지역 : 1개 시도(인천, 울산, 경기, 경북)

- (설치기준)

입소정원 :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10~45인 정도)

- 시설특성 :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 목욕실(화장실) 등 설치

설치방법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신축, 임차(한국토지주택공사)

- (재정지원) 개소당 1.5억원~5.5억원(국비)

2] 추진배경·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하는 경우 다른 입소된 가족과 생활에서 불편이 있어 이들을 위한 가족보호 시설 설치 필요

3] 향후 계획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보호시설에 편리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65개소)을 연차적으로 가족보호시설로 전환

※ '13년 소요예산 : 17.5억원(5개소, 국비)

1 개요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등 자연·인적재난 및 소방분야에 대한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
 - * '12년 소방방재 R&D 예산 : 263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
 - * '12년 예산 : 재해위험지구정비(3,688억원), 소하천정비(2,269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578억원)

2 추진배경·필요성

- (자연재해의 대형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
 - * 전 세계 연평균 자연재난 발생 건수(10명이상 사망 또는 100명이상 피해)
 - ('70년대) 90건, ('80년대) 182건, ('90년대) 297건, ('00년대) 449건
- (선제적 재난예방) 피해발생 이후 재난복구가 아닌 사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
 - *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 다중재해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예방 1달러 투자시 약 3.65달러의 재해예방 효과 발생

3 향후 계획

- '12년 예산으로 기 반영된 소방방재 연구개발 사업 및 재해예방 공사를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
 - * 재해위험지구정비 218개소, 소하천정비 323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 22